

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 공고

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3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** :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
- 예산규모** : 190억원
- 사업기간** : 협약일 ~ '25. 11. 30까지
- 관리기관** :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
- 사업내용**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 형태로 제공(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**)

*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(정부지원금 + 기업분담금)

**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

□ 추진절차



□ 신청대상 : '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(레전드50+ 참여기업 전용)바우처' 및 '지역자율형바우처'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(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(4p~) 참고)

신청 제외 대상

- ◆ 정부·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- 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◆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◆ 휴·폐업 기업
- ◆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◆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◆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◆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경우
- ◆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◆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업체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신청기간 : '25. 2. 3. ~ '25. 3. 6.

○ (접수마감)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(혁신바우처플랫폼)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, 이후 추가 접수 불가

- 접수 마감일인 3월 6일(목)은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과 비수도권(수도권 外 14개 지자체)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

* 신청서 제출(3.6,목) : 수도권 기업(09:00~14:00) / 비수도권 기업(14:00~18:00)

-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,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

※ 지역자율형바우처(20억원)는 지방청별로 개별 공고 예정('25.2월 중)

□ 신청방법 : 혁신바우처플랫폼(<http://www.mssmiv.com>) 에서 신청

○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*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모두 필요

*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

○ [별첨5]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(지)부 중 선택 가능

○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

□ 신청시 유의사항

○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

신청 전 유의사항

◆ 신청 전, 혁신바우처플랫폼(www.mssmiv.com)내 [메뉴판]-[서비스검색]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 순위작성 (사업별 신청서식 참조)

◆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,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

◆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,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며, 사업 완료 이후,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

* 2자협약(중진공-수요기업) :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

3자계약(운영기관-수행기관-수요기업) :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

◆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

◆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 가능

◆ 他 정부지원사업(수출바우처, 해외지사화 등)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

2.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

1]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(레전드50+ 프로젝트 참여기업 전용)

- (지원대상)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+ 참여기업 가운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주업종이 제조업*인 기업
 -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"C" 해당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- (지원규모) 약 170억원 내외
 - *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 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 - * 다만,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

[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]

| 분야 | 프로그램 | 서비스 지원내용 | 한도 (백만원) |
|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컨설팅 | 경영기술 전략 | - 생산관리, 품질관리, 기술사업화 전략, 노무, 인사, 조직, 세무, 재무, 회계, 경영전략, 구조개선, 영업전략, 융복합 등 - 노동법 대응(최저임금제, 근로시간 대응 등) | 15 |
| 기술 지원 | AX·DX 추진전략 | -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·DX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| 15 |
| | 시제품 제작 | 디자인 목업, 제품 형상 구현(샘플금형, 비금형, 정밀 미세가공, 섬유, 식품) | 30 |
| | 시스템 및 시설구축 | 생산관리 정보화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, 연구시설, 스마트공장 구축, 공정설계(생산공정, 생산라인),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| 20 |

| 분야 | 프로그램 | 서비스 지원내용 | 한도 (백만원)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| IP기반 기술사업화 | -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- 지식재산권(IP) 획득 지원 (분쟁대응 포함) - 지재권 진단, 신제품 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 | 15 |
| |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| - 하드웨어(성능, 안전성, 신뢰성, 조달품 적합, 유해물질 분석, 자가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 웹/앱) 등 시험·인증·연구장비활용 -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| 15 |
| 마케팅 | 디자인 개선 | 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 | 15 |
| | 브랜드 지원 | CI디자인개발, BI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 | 20 |
| | 홍보물 제작 | 기업·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(브로셔, 카달로그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 | 20 |
| | 광고 지원 |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(온라인 광고, 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 등) | 2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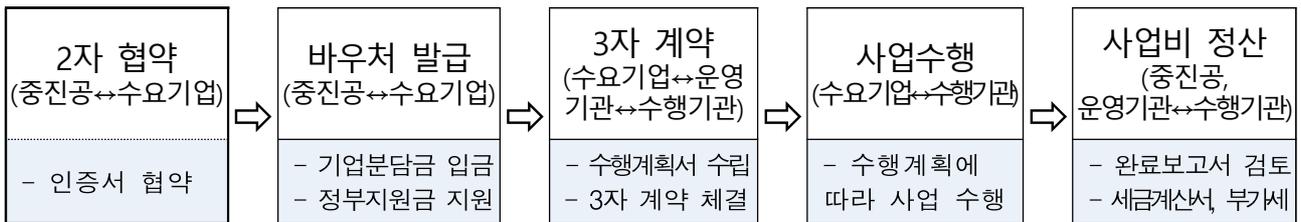
*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(mssmiv.com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
***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·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

- (바우처 이용절차)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→ ② 바우처 발급 → ③ 3자 계약 → ④ 사업수행 →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

*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(사업비 정산 시)



- (보조율)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(40 ~ 85%)

| 평균 매출액 | 정부지원 비율 | 자기부담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3억원 이하 | 85% | 15% |
| 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65% | 35% |
| 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55% | 45% |
| 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 | 45% | 55% |
| 120억원 초과(중기업) | 40% | 60% |

○ (바우처 사용기간) '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※ 사용기간 엄수

○ (신청서류)

| 연번 | 구분 | 서류명 |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필수 ¹⁾ | 사업 신청서 | 온라인 작성 |
| ② | |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|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|
| ③ | | 사업계획서 | [별첨1]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|
| ④ |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국세청 확인본 |
| ⑤ | |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| 국세청 확인본 |
| ⑥ |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기업 및 대표자 |
| ⑦ | | 레전드50+ 참여기업 확인서 *지역성장형 바우처 신청기업 제출 필수 | 서식3 참조 |
| ⑧ | 해당 시 |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|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|
| ⑨ | |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| 온라인작성 |
| ⑩ | 해당 시 | ①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, ②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(서식4) (⑥,⑦,⑧,⑨,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) |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⁾ |

1)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

2) ①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, ②협업승인 기업,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, ④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, ⑤중소기업 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, ⑥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(석유정제, 화학, 고무 플라스틱, 비금속 광물, 1차금속 제조업), ⑦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, ⑧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, ⑨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, ⑩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

○ (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)

- (①~②) 신청서, 신용정보동의서 : 혁신바우처플랫폼(<http://www.mssmiv.com>)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
- (③, ⑥) 사업계획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: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

- (④, ⑤, ⑧)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* 활용 제출
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(mssmiv.com) 공지되어 있으며,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

**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·개인('21년, '22년, '23년) 제출

- (⑦) 지역특화프로젝트(레전드50+) 참여기업 확인서 :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스캔본 첨부(서식3 참고)
- (⑨)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(유효기간 등 확인)
 - *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,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(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)
 - **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
 - ***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- (⑩)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
 - * 우대가점 연번⑩(①~⑤)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- (평가절차) 서면심사 → 지역별위원회 → 최종 선정
 - * 현장평가 면제
 - (서면심사) 신청요건,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
 - (지역별위원회) 중기부,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,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

② 지역자율형바우처

- (지원대상)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주업종이 제조업*인 기업
-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"C" 해당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
- (지원규모) 약 20억원 내외
 - *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 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 - * 다만,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

[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]

| 분야 | 프로그램 | 서비스 지원내용 | 한도 (백만원) |
|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컨설팅 | 경영기술 전략 | - 생산관리, 품질관리, 기술사업화 전략, 노무, 인사, 조직, 세무, 재무, 회계, 경영전략, 구조개선, 영업전략, 융복합 등 - 노동법 대응(최저임금제, 근로시간 대응 등) | 15 |
| 기술 지원 | AX·DX 추진전략 | -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·DX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| 15 |
| | 시제품 제작 | 디자인 목업, 제품 형상 구현(샘플금형, 비금형, 정밀 미세가공, 섬유, 식품) | 30 |
| | 시스템 및 시설구축 | 생산관리 정보화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, 연구시설, 스마트공장 구축, 공정설계(생산공정, 생산라인),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| 20 |
| | IP기반 기술사업화 | -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- 지식재산권(IP) 획득 지원 (분쟁대응 포함) - 지재권 진단, 신제품 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 | 15 |

| 분야 | 프로그램 | 서비스 지원내용 | 한도 (백만원)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|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| - 하드웨어(성능, 안전성, 신뢰성, 조달품 적합, 유해물질 분석, 자가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 웹/앱) 등 시험·인증·연구장비활용 -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| 15 |
| 마케팅 | 디자인 개선 | 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 | 15 |
| | 브랜드 지원 | CI디자인개발, BI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 | 20 |
| | 홍보물 제작 | 기업·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(브로셔, 카달로그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 | 20 |
| | 광고 지원 |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(온라인 광고, 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 등) | 2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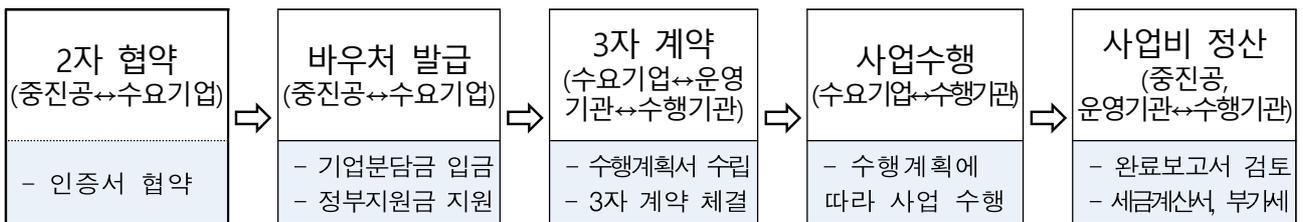
*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아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(mssmiv.com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
***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·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

- (바우처 이용절차)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→ ② 바우처 발급 → ③ 3자 계약 → ④ 사업수행 →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

*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(사업비 정산 시)



- (보조율)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(45 ~ 85%)

| 평균 매출액 | 정부지원 비율 | 자기부담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3억원 이하 | 85% | 15% |
| 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65% | 35% |
| 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 55% | 45% |
| 50억원 초과 ~120억원 이하 | 45% | 55% |

- (바우처 사용기간) '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※ 사용기간 엄수

○ (신청서류)

| 연번 | 구분 | 서류명 |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필수 ¹⁾ | 사업 신청서 | 온라인 작성 |
| ② | |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|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|
| ③ | | 사업계획서 | [별첨1]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|
| ④ |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국세청 확인본 |
| ⑤ | |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| 국세청 확인본 |
| ⑥ |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기업 및 대표자 |
| ⑦ | | 레전드50+ 참여기업 확인서 *지역성장형 바우처 신청기업 제출 필수 | 지방자치단체 발급본 (서식3 참조) |
| ⑧ | 해당 시 |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|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|
| ⑨ | |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| 온라인 작성 |
| ⑩ | |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, ②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 중소기업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(서식4) (⑥,⑦,⑧,⑨,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) |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⁾ |

1)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

2) **①**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, **②**협업승인 기업, **③**유연근무제 활용기업, **④**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, **⑤**중소기업 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, **⑥**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(석유정제, 화학, 고무 플라스틱, 비금속 광물, 1차금속 제조업), **⑦**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, **⑧**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, **⑨**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, **⑩**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

○ (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)

- (①~②) 신청서, 신용정보동의서 : 혁신바우처플랫폼(<http://www.mssmiv.com>)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

- (③, ⑥) 사업계획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: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

- (④, ⑤, ⑦)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* 활용 제출
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(mssmiv.com) 공지되어 있으며,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

**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·개인('21년, '22년, '23년) 제출

- (⑧)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(유효기간 등 확인)

*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,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(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)

**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

***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
- (⑨)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

* 우대가점 연번⑩(①~⑤)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

○ (평가절차) 서면심사 → 진단·평가 → 지역별위원회 → 최종 선정

- (서면심사) 신청요건,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
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
- (지역별위원회) 중기부,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,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

3. 문 의 처

| 구분 | 전화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역성장형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 | 1357, 1811-3655 (055-751-9847, 9851) |
| 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 | 02-3771-1100 |

* [별첨5] 중진공 지역본·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

별첨1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

【서식1】 사업 계획서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

1. 회사연혁

| 년 월 | 주요 내용 (설립, 상호/대표자변경, 법인전환, 자본증자, 사업장/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) |
|-----|---|
| | |
| | |

2. 대표자 경력

| 대표자 | 학력 | 졸업연월 | 학교 | 학과(전공,계열) | 졸업 | 수료 | 중퇴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|
| | | | | | | | |
| | 주요경력 | 기간 | 근무처 | 근무처 업종 | 최종직위(담당업무) | | |
| | | | | | | | |
| 동종업종 종사기간 | | 년 개월 | 포상 및 상훈 | | | | |

3. 주요 거래처

| 구분 | 업체명 (연락처) | 거래품목 | 사업자 등록번호 | 거래비중 (%) | 연간 거래액 (백만원) | 거래기간 | 대금회수 기간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매출처 | 국내 | | | | | 개월 | 일 |
| | | | | | | 개월 | 일 |
| | | | | | | 개월 | 일 |
| | 해외 | | | | | 개월 | 일 |
| | | | | | | 개월 | 일 |

4. 주주현황[주식 보유순으로 기재]

(20 년 월 일 현재)

| 주주명 |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| 소유주식 금액(백만원) | 비율 | 주주명 |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| 소유주식 금액(백만원) | 비율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5.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

| | |
|--|--|
| 제품용도 및 특성 (생산품 설명) |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|
| 제품생산 공정 |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|
| 시장상황 (주요 수요처, 경쟁업체 현황 등) | |
| 기술품질 경쟁력 (국내의 경쟁사 제품과 기술, 품질, 가격 비교) |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, 기술개발환경(기술개발 조직현황, 설비 보유 여부 등),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|
|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| 지적재산권 출원/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(증빙서류 제출필요) 지적재산권은 특허, 상표권,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,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(ex. KS, KC, CE 등) |

5-1.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(참여이력 보유 기업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여연도 | | 매출 발생현황 (단위 : 천원) |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|
| 참여 서비스 (프로그램) | | 고용창출 효과 (단위 : 명) |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|
| 주요 성과 |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, 개선 성과,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| | |

※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(필수),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

6.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

6-1. 수행 과제명

| | |
|------|---|
| 컨설팅 |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(주제)을 작성.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(ex.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) |
| 기술지원 | (ex.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) |
| 마케팅 | (ex. SNS,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) |

6-2. 희망 수행기관

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[메뉴판]-[서비스검색]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"6-1.수행 과제"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. 미등록 기관은 미등록으로 체크

예시)

| 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컨설팅 | 1순위 | OO컨설팅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 2순위 | OX연구원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|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컨설팅 | 1순위 |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 2순위 |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
| 기술 지원 | 1순위 |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 2순위 |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
| 마케팅 | 1순위 |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 2순위 |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| 플랫폼 내 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등록 |

※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기업은 마케팅 부분 작성불필요

6-3. 과제개요

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,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, 용도, 기능, 사용처, 이미지,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,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

6-4. 필요성 및 차별성

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, 시급성, 타 제품과의 기술,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

6-5. 추진내용

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, 추진계획, 추진 준비현황, 달성목표 등을 작성

6-6. 지원효과

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,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, 예상매출 성과, 고용창출 효과,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고용창출 | 고용 증가율 | (%) |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(%) |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|
| | 신규 고용인원수 | (명) | 인원 수 | |
| 매출증대 | 매출액 증가율 | (%) |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(%) | 재무제표 기준 |
| | 매출 증가액 | (천원) |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(천원) | |

※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

7. 사업비(바우처 금액) 조성 내역

| 구 분 | 신 청 분 야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|
| | 컨설팅 | 기술지원 | 마케팅 | 합계 |
| 정부보조금 (천원) | 천원 | 천원 | 천원 | 천원 |
| 기업분담금 (천원) | 천원 | 천원 | 천원 | 천원 |

*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: 매출액 3억원 이하(85%), 3억원~10억원(75%), 10억원~50억원(65%), 50억원~120억원(45%)
120억원 초과(40%)

*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: 50,000천원, *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시 신청분야 내 '마케팅' 공란

8. 추진일정[빛금색칠 혹은 Bar 표시]

| 신청분야 | '25년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| 컨설팅 | | | | | | | | | |
| 기술지원 | | | | | | | | | |
| 마케팅 | | | | | | | | | |

* 중대재해는 마케팅 작성불필요

9.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

| 과제명 | 주관부처 | 참여과제 내용 | 참여년월 |
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10.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

| | |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|--|------|-----|
| 성 명 | | 직 위 | | 휴대전화 | |
| 최종학력 및 전공 | 예시)대졸, 경영학 | 생년월일 | | 이메일 | |
| 경 력 | 연 도 | 기 관 명 | | 직 위 | 비 고 |
| | ~ | | | | |
| | ~ | | | | |
| 기타 특기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상경력 ○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| | | | |

【서식2】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(‘컨설팅’-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限)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(융복합컨설팅) 협업계획서

협업체 기본정보[신청시, 주관기업이 전담작성]

| 구 분 | | 기 업 명 | 대표자 | 설립연도 | 매출액(천원)** | 생산품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|
| 협업체 구성 | 주관기업* | | | | | |
| | 참여기업***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*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, 평가, 협약·계약 및 정산 등 진행(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)

**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(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·개인(‘21년, ’22년, ’23년) 제출)

**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

협업 추진체계

| 기 업 명 | 역할분담 | 협업비중(%) | 융합 공동기술개발(제품) 설명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예)생산 | | 제품사진 | 상세설명 |
| | 예)마케팅 | | | |
| | 예)디자인 | | | |
| | | | | |

공동협력방안

| 구 분 | 협 력 방 안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품개발 및 개선 | | | | |
| 생산 | | | | |
| 사업화 | | | | |
| 협력모델 | 비즈니스모델 | <input type="checkbox"/> B to B | <input type="checkbox"/> B to C | <input type="checkbox"/> B to G |
| | 판로대상 | 국내 | | |
| | | 국외 | | |

제0000-시·도명-00호

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
참여기업 선정확인서

기업명 : (사업자등록번호)
대표자 :
소재지 :
선정기간 :

위 기업을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
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광역자치단체의 장 ○ ○ ○ (직인)

**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
참여기업 선정확인서**

기업명 : (사업자등록번호)
대표자 :
소재지 :
선정기간 :

**위 기업을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
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0000년 00월 00일

○○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○ ○ ○ (직인)

【서식4】 중소기업 밀집지역 '주의·심각' 단계 입주기업 확인서 (해당시)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기관명 | 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| | |
| 센터장 성명 | | 담당자 성명 | |
| 담당자 이메일 | | 담당자 연락처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기업명 | | 대표자명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000-00-00000 | 법인등록번호 | 000000-0000000 |
| 담당자명 | | 담당자 부서/직위 | |
| 담당자 이메일 | | 담당자 연락처 | 000-0000-0000 |
| 주 소 (도로명 상세주소) | (00000)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| | |
| 요청내용 |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 확인 | | |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점 검토의견 | 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. |
| 확인서 유효기간 | 2025.00.00. ~ 2025.00.00. |
| <p>2025년 0월 0일</p> <p>○○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장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</p> | |
| <p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</p> | |

< 참고 >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

□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

○ 위기지원센터 확인서(서식4) 발급 관련 문의처

| 지역 | 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강원 | 강원테크노파크 |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 | 033-248-5668 |
| 경남 | 경남테크노파크 |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| 055-259-3324 |
| 경북 | 경북테크노파크 |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| 053-819-3032 |
| 광주 | 광주테크노파크 |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| 062-602-7233 |
| 대구 | 대구테크노파크 |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| 053-757-3708 |
| 대전 | 대전테크노파크 |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| 042-930-4848 |
| 부산 | 부산테크노파크 |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| 051-320-3532 |
| 울산 | 울산테크노파크 |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| 052-219-8728 |
| 전남 | 전남테크노파크 |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| 061-729-2500 |
| 전북 | 전북테크노파크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-5 | 063-219-2114 |
| 충남 | 충남테크노파크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| 041-589-0163 |
| 충북 | 충북테크노파크 |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| 043-270-2236 |

* 서울, 경기, 인천, 세종, 제주는 위기지원센터 미설치지역으로,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

별첨2

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*
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“C”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16. 담배 제조업 | C12 |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|
| 17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18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19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20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1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2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3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4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5.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|

*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.

*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 위 표에도 불구하고,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

별첨3

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*
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“C”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 |
| 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4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5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6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7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 |
| 8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9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10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1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12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13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14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5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6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|
| 18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19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20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22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2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4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5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|

*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.

*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* 위 표에도 불구하고,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

별첨4

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

□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

- 법인 및 개인 :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('21년 ~ '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)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

| 설립일자별 구분 (창업·합병·분할일) |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'21년.1.1 이전 설립 기업 | - '21년, '22년, '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|
| '21년 설립 | - '22, '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|
| '22년 설립 | - '23년 매출액 |
| '23.1월~'23.11월 설립 | - '23년 매출액을 '23년 영업월수'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* 영업월수 :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|
| '23.12월 설립 | - '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|
| '24년 설립기업 | -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('24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) |
| '25년 설립기업 | -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|

☞ 매출액 산정 예시(개인)

- 2021.3.14에 창업(합병, 분할)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
 - '21년, '22년, '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
- 2023.3.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
 - '23년 매출액을 9(4월~12월)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
- 2023.12.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
 - '23년 매출액을 12.14부터 12.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,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

별첨5

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

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소재지

| 지역본(지)부 | | 주소 | 전화번호 |
|---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인천 | 서울지역본부 | 서울 중구 무교로21(무교동)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5층 | 02-2106-7454 |
| | 서울동부지부 |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(서초동)한국벤처투자빌딩 101~102호 | 02-2023-4321 |
| | 서울서부지부 |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(가산동) 가산W센터 413호 | 02-2106-7414 02-2106-7412 |
| | 서울남부지부 |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(서초동)한국벤처투자빌딩 101~102호 | 02-2023-4335 |
| | 인천지역본부 |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(송도동 7-50), 갯벌타워 14층 | 032-837-7031 |
| 경기 강원 | 인천서부지부 |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,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| 032-560-2363 |
| | 경기지역본부 |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(이의동) 경제과학진흥원 11층 | 031-260-4974 |
| | 경기동부지부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(야탑동)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| 031-760-9004 |
| | 경기서부지부 |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(고잔동), 1층(신용보증기금 빌딩) | 031-783-0623 |
| | 경기남부지부 |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-434호 | 031-899-9104 |
| | 경기북부지부 |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(백석동)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| 031-920-6723 |
| 대전 충청 | 강원지역본부 |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(중앙로2가) 우리은행빌딩 5층 | 033-269-6943 |
| | 강원영동지부 |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청 15층 | 033-649-9377 |
| | 대전지역본부 | 대전 서구 청사로 136(월평동) 대전무역회관 15층 | 042-281-3725 042-281-3726 |
| | 세종지역본부 | 세종 한누리대로 320, 리치먼드시티 2층 (나성동) | 044-860-8307 |
| | 충남지역본부 |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(불당동 1418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| 041-589-4587 |
| 광주 전라 | 충북지역본부 |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(가경동)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| 042-230-6832 042-230-6834 |
| | 충북북부지부 |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(연수동) 2층 | 043-841-3613 |
| | 광주지역본부 |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(치평동) 상무트윈스빌딩 6층 | 062-600-3066 |
| | 전북지역본부 |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(효자동3가) 전주상공회의소 4층 | 063-210-9943 |
| | 전북서부지부 |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(나운동) 한화생명빌딩 4층 | 063-460-9831 |
| 대구 경북 | 전남지역본부 |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| 061-280-8043 |
| | 전남동부지부 |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(장천동) 순천상공회의소 3층 | 061-729-1557 |
| | 대구지역본부 |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(산격동)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| 053-606-8433 |
| | 경북지역본부 |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,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| 054-440-5912 |
| | 경북동부지부 |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(지곡동)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| 054-288-7343 |
| 부산 경남 | 경북남부지부 |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(삼풍동300)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| 053-603-3321 |
| | 부산지역본부 | 부산 진구 중앙대로639, 23층(엠디엠타워) | 051-630-7425 |
| | 부산동부지부 |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(재송동) 벽산e-센텀클래스원 201~202호 | 051-745-5923 |
| | 울산지역본부 | 울산 남구 삼산로 274 (삼산동 1479-5) W-Center 14층 | 052-703-1123 052-703-1139 |
| | 경남지역본부 |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| 055-270-9755 |
| 제주 | 경남동부지부 |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| 055-310-6626 |
| | 경남서부지부 |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(충무공동) 이노휴먼씨티 3층 | 055-751-2903 |
| | 제주지역본부 |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2동)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| 064-754-5157 |

□ 관할구역

| 중기부 지방청 | 중진공 지역본지부 | 주 관할구역 |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|
|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 | 중구 , 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성북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랑구 | |
| | 서울동부 | 강동구, 광진구, 송파구 | |
| | 서울서부 | 금천구 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동작구, 영등포구 | |
| | 서울남부 | 서초구 , 강남구 | |
| 인천 | 인천 | 연수구 , 계양구, 남동구, 부평구 | 부천시 |
| | 인천서부 | 서구 , 동구, 미추홀구, 중구, 강화군, 옹진군 | 김포시 |
| 경기 | 경기 | 수원시 , 안성시, 용인시, 과천시, 안양시, 의왕시, 군포시 | |
| | 경기동부 | 성남시 , 광주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이천시, 하남시, 가평군, 양평군, 여주시 | 가평군 |
| | 경기서부 | 안산시 , 시흥시, 광명시 | 화성시(남양읍, 마도면, 비봉면, 서신면, 송산면) |
| | 경기남부 | 화성시 , 평택시, 오산시 | 화성시(남양읍, 마도면, 비봉면, 서신면, 송산면) |
| | 경기북부 | 고양시 ,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김포시, 부천시 | 김포시, 부천시 |
| 대전 세종 | 대전 | 대전시 , 계룡시, 논산시, 금산군 | 영동군, 옥천군 |
| | 세종 | 세종시 , 공주시, 청양군, 보령시, 부여군, 서천군 | 서천군 |
| 충남 | 충남 | 천안시 , 서산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, 태안군, 홍성군 | |
| 충북 | 충북 | 청주시 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진천군, 증평군 | 영동군, 옥천군, 음성군 |
| | 충북북부 | 충주시 , 제천시, 괴산군, 단양군, 음성군 | 음성군 |
| 강원 | 강원 | 춘천시 , 원주시, 양구군, 영월군, 인제군, 정선군, 철원군, 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 | 가평군, 정선군, 평창군 |
| | 강원영동 | 강릉시 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태백시, 고성군, 양양군 | 정선군, 평창군 |

| 중기부 지방청 | 중진공 지역본부 | 주 관할구역 |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북 | 전북 | 전주시 , 남원시, 무주군, 순창군, 완주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, 정읍시, 익산시, 김제시 | 익산시 |
| | 전북서부 | 군산시 , 고창군, 부안군 | 서천군, 익산시 |
| 광주· 전남 | 광주 | 광주시 , 나주시, 담양군, 영광군, 장성군, 함평군, 화순군 | 나주시, 영광군, 함평군 |
| | 전남 | 무안군 , 목포시, 강진군, 신안군, 영암군, 완도군, 진도군, 해남군 | 나주시, 영광군, 장흥군, 함평군 |
| | 전남동부 | 순천시 , 광양시, 여수시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보성군, 장흥군 | 장흥군 |
| | 제주 | 제주시 , 서귀포시 | |
| 대구· 경북 | 대구 | 대구시 | 군위군, 고령군 |
| | 경북 | 구미시 , 김천시, 문경시, 상주시, 안동시, 영주시, 고령군, 봉화군, 성주군, 예천군, 의성군, 칠곡군 | 군위군, 고령군 |
| | 경북동부 | 포항시 , 경주시, 영덕군, 영양군, 울릉군, 울진군, 청송군 | 경주시(외동읍, 내남면, 산내면) |
| | 경북남부 | 경산시 , 영천시, 청도군 | |
| 울산 | 울산 | 울산시 | 경주시(외동읍, 내남면, 산내면), 양산시 |
| 부산 | 부산 | 부산진구 , 강서구, 동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영도구, 중구 | |
| | 부산동부 | 해운대구 , 금정구, 남구, 동래구, 수영구, 연제구, 기장군 | |
| 경남 | 경남 | 창원시 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 | |
| | 경남동부 | 김해시 , 밀양시, 양산시 | 양산시 |
| | 경남서부 | 진주시 , 거제시, 사천시, 통영시, 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산청군, 하동군, 함양군, 합천군 | |

* : 중진공 지역본부 소재 구역